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0000호

「공항 소음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 소음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다수의 공항안전정책 관련 행정규칙이 부서단위 또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운영된 결과,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외 정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이 적기에 되지 못하거나, 행정규칙 중복·연계성 부족 등 관리·운영시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 공항 시설·안전·운영·환경 등 공항 안전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재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폐합, 체계 조정, 용어정의 통일, 국제기준 반영 등 체계화(공통)

- 1) (통·폐합) 유사 행정규칙의 목적·정의·적용범위·근거 규정 정비, 인용 규정 명칭 변경, 용어 순화, 포괄적 제명 등을 반영하여 통·폐합

* 現 42개(고시18, 훈령7, 예규17) → 개정안 18개(고시11, 훈령1, 예규6, 폐지1)

- 2) (체계 조정) 통합된 행정규칙은 장, 절 또는 별표로 구분하고, 규정별 연관성을 고려하여 각 조항을 배치 및 조정
- 3) (용어정의 통일 등) 용어정의 등 문구 통일, 현행 법령 체계 등에 따른 개정 필요사항 등 반영
- 4) (국제기준 반영) 활주로 상태평가보고 체계(GRF), 활주로 운영등급(CAT-III 통합), 공항포장강도 분류기준 등 제·개정사항 반영
 - * GRF(Global Reporting Format)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활주로 표면상태 평가·보고 체계
 - ** CAT-III : a, b, c로 구분되었던 CAT-III가 하나로 통합
- 5) (기타) 공항 환경관리 기준(고시), 공항 내진 설계기준(고시), 공항시설 최소 유지관리기준(고시), 공항시설 성능개선 기준(고시)은 현행 유지(고시 4개) 및 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훈령 1개) 폐지

나. (내용 수정·통합) 항공 소음단위 변경(웨클 → Lden, '23.1.1. 시행)에 따라 소음 측정, 소음영향도 조사, 방음시설 실내·외 소음도 및 차음량 조사방법 변경, 방음시설 유리제품 수정(하드코팅 복층창 → 로이 복층창)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항안전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4343, 4354(팩스 044-201-5635)
- 이메일 : pans20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전화 044-201-4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